

[2015 건축사예비시리즈 건축법규] 1차 정오표 [2015. 4. 20]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8	내용추가		<p>[2] 건축물의 구분</p>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7. 특수구조건축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민구조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 건축물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td> </tr> </table>	7. 특수구조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민구조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 건축물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7. 특수구조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민구조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 건축물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19	내용추가		<p>[11] 대수선</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cccccc;">외부형태</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관지구안에서의 ~ 것 2.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m²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td> </tr>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층건축물 ②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제외) 안의 - 2,000m² 이상 다중이용업 -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td> </tr> </table>	외부형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관지구안에서의 ~ 것 2.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m²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층건축물 ②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제외) 안의 - 2,000m² 이상 다중이용업 -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외부형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관지구안에서의 ~ 것 2.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m²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층건축물 ②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제외) 안의 - 2,000m² 이상 다중이용업 -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20	내용수정 및 표추가	<p>[13] 실내건축 실내건축이란 ~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p>	<p>[13] 실내건축 실내건축이란 ~ 설치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p> <table border="1"> <tr> <td colspan="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 2. 벽·천장·바닥 및 반자를 설치 </td> </tr> <tr> <td>3. 실내에 설치하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간, 창호 및 출입문 설치 전기, 가스, 급수, 배추, 환기시설 설치 충돌, 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시설 설치 </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 2. 벽·천장·바닥 및 반자를 설치 		3. 실내에 설치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간, 창호 및 출입문 설치 전기, 가스, 급수, 배추, 환기시설 설치 충돌, 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시설 설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 2. 벽·천장·바닥 및 반자를 설치 									
3. 실내에 설치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간, 창호 및 출입문 설치 전기, 가스, 급수, 배추, 환기시설 설치 충돌, 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시설 설치 								
35	내용수정	<table border="1"> <tr> <td>7. 판매시설</td> <td>④ 청소년~</td> <td>바닥면적의 합계 150m² 이상인 것</td> </tr> </table>	7. 판매시설	④ 청소년~	바닥면적의 합계 150m ² 이상인 것	<table border="1"> <tr> <td>7. 판매시설</td> <td>④ 청소년~</td> <td>바닥면적의 합계 500m² 이상인 것</td> </tr> </table>	7. 판매시설	④ 청소년~	바닥면적의 합계 500m ² 이상인 것
7. 판매시설	④ 청소년~	바닥면적의 합계 150m ² 이상인 것							
7. 판매시설	④ 청소년~	바닥면적의 합계 500m ² 이상인 것							
46	내용수정	<table border="1"> <tr> <td>6. 사용승인을 ~ 경우</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면적의 증가(증축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동주택 ~ 범위 내 나. 이외의 ~ 범위 내 </td> </tr> </table>	6. 사용승인을 ~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면적의 증가(증축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동주택 ~ 범위 내 나. 이외의 ~ 범위 내 	<table border="1"> <tr> <td>6. 사용승인을 ~ 경우</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증축의 규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면적의 증가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 </td> </tr> </table>	6. 사용승인을 ~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증축의 규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면적의 증가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 		
6. 사용승인을 ~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면적의 증가(증축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동주택 ~ 범위 내 나. 이외의 ~ 범위 내 								
6. 사용승인을 ~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증축의 규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면적의 증가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 								
83	내용수정	(2) 제한절차 국토교통부장관~ 제한할 수 있다.	(2) 제한절차 국토교통부장관~ 제한 <u>하여야 한다.</u>						
104	표내용 수정	(2)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 등 <hr/> 1.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 <hr/> 2. 공사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	(2)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 등 <hr/> 1.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 <hr/> <u>2. 공사현장의 미관개선을 위한 조경 등의 설치</u>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121	표내용 수정	(1) 업무대행 대상 <table border="1"> <tr> <th>대행업무</th> <th>업무대행자</th> </tr> <tr> <td>1. 건축허가와 ~ 확인업무</td> <td>건축사</td> </tr> </table>		대행업무	업무대행자	1. 건축허가와 ~ 확인업무	건축사	(1) 업무대행 대상 <table border="1"> <tr> <th>대행업무</th> <th>업무대행자</th> </tr> <tr> <td>1. 건축허가 및 <u>건축신고와</u> 관련된 ~ 확인업무</td> <td>건축사</td> </tr> </table>		대행업무	업무대행자	1. 건축허가 및 <u>건축신고와</u> 관련된 ~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업무	업무대행자																
1. 건축허가와 ~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업무	업무대행자																
1. 건축허가 및 <u>건축신고와</u> 관련된 ~ 확인업무	건축사																
	표내용 추가	3 점검항목 <table border="1"> <tr> <th>항 목</th> <th>점검내용 (적합여부 확인 대상 규정)</th> </tr> <tr> <td>4. 화재안전</td> <td>건축법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3조(지하층)</td> </tr> <tr> <td>6. 에너지~</td> <td>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td> </tr> </table>		항 목	점검내용 (적합여부 확인 대상 규정)	4. 화재안전	건축법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3조(지하층)	6. 에너지~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3 점검항목 <table border="1"> <tr> <th>항 목</th> <th>점검내용 (적합여부 확인 대상 규정)</th> </tr> <tr> <td>4. 화재안전</td> <td>건축법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u>제52조의2(실내건축)</u>, 제53조(지하층)</td> </tr> <tr> <td>6. 에너지~</td> <td>제64조~ 열손실방지) <u>삭제</u></td> </tr> </table>		항 목	점검내용 (적합여부 확인 대상 규정)	4. 화재안전	건축법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u>제52조의2(실내건축)</u> , 제53조(지하층)	6. 에너지~	제64조~ 열손실방지) <u>삭제</u>
항 목	점검내용 (적합여부 확인 대상 규정)																
4. 화재안전	건축법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3조(지하층)																
6. 에너지~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항 목	점검내용 (적합여부 확인 대상 규정)																
4. 화재안전	건축법 ~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u>제52조의2(실내건축)</u> , 제53조(지하층)																
6. 에너지~	제64조~ 열손실방지) <u>삭제</u>																
142 ~143	내용추가	4 주택관리지원센터 (1)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2)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table border="1"> <tr><td>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td></tr> <tr><td>2.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td></tr> <tr><td>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td></tr> <tr><td>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td></tr> <tr><td>5. 건축물의 개량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td></tr> <tr><td>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td></tr> </table>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2.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	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5. 건축물의 개량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2.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																	
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5. 건축물의 개량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186	내용수정 및 추가	1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시 설계자로부터 받은 구조안전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구조계산을 요하는 건축물</th> <th>구조계산자의 자격</th> </tr> <tr> <td>8.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td> <td rowspan="2">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td> <td rowspan="2">설계자(건축사)</td> </tr> <tr> <td>9. 특수한 설계, 시공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td> </tr> </table> 예외 <u>삭제</u> 2 건축구조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table border="1"> <tr> <td>2. 경간 30m 이상인 건축물</td> <td>2. 건축구조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td> </tr> <tr> <td></td> <td>2. 경간 <u>20m</u> 이상인 건축물</td> </tr> </table>				구 분	구조계산을 요하는 건축물	구조계산자의 자격	8.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설계자(건축사)	9. 특수한 설계, 시공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2. 경간 30m 이상인 건축물	2. 건축구조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2. 경간 <u>20m</u> 이상인 건축물	
구 분	구조계산을 요하는 건축물	구조계산자의 자격															
8.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설계자(건축사)															
9. 특수한 설계, 시공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2. 경간 30m 이상인 건축물	2. 건축구조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2. 경간 <u>20m</u> 이상인 건축물																
192	내용수정 및 추가	2 경계벽 및 칸막이 벽의 구조제한 <table border="1"> <tr> <th>구획되는 부분</th> </tr> <tr> <td>각 거실간의 칸막이벽</td> </tr> <tr> <td>호실간 칸막이벽</td> </tr> </table>				구획되는 부분	각 거실간의 칸막이벽	호실간 칸막이벽	2 경계벽 및 칸막이 <u>벽 등의</u> 구조제한 <table border="1"> <tr> <th>구획되는 부분</th> </tr> <tr> <td>각 거실간의 <u>경계벽</u></td> </tr> <tr> <td>호실간 <u>경계벽</u></td> </tr> </table>		구획되는 부분	각 거실간의 <u>경계벽</u>	호실간 <u>경계벽</u>				
구획되는 부분																	
각 거실간의 칸막이벽																	
호실간 칸막이벽																	
구획되는 부분																	
각 거실간의 <u>경계벽</u>																	
호실간 <u>경계벽</u>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192	하단에 내용추가	<p>(3) 층간 바닥 구조제한 대상</p> <table border="1"> <tr> <td>1. 단독주택 중 다가주택</td> <td rowspan="4">층간바닥(화장실 바닥 제외)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td> </tr> <tr> <td>2. 공동주택 (주택법 사업계획승인대상 제외)</td> </tr> <tr> <td>3. 다중생활시설(고시원)</td> </tr> <tr> <td>4. 오피스텔</td> </tr> </table> <p>【참고】 주택법 층간 바닥충격음 소음방지기준</p> <table border="1"> <tr> <td>1. 경량 충격음</td> <td>58 데시벨 이하</td> </tr> <tr> <td>2. 중량 충격음</td> <td>50 데시벨 이하</td> </tr> </table>	1. 단독주택 중 다가주택	층간바닥(화장실 바닥 제외)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 (주택법 사업계획승인대상 제외)	3. 다중생활시설(고시원)	4. 오피스텔	1. 경량 충격음	58 데시벨 이하	2. 중량 충격음	50 데시벨 이하												
1. 단독주택 중 다가주택	층간바닥(화장실 바닥 제외)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 (주택법 사업계획승인대상 제외)																							
3. 다중생활시설(고시원)																							
4. 오피스텔																							
1. 경량 충격음	58 데시벨 이하																						
2. 중량 충격음	50 데시벨 이하																						
198	5번문제 6번문제 6번해설	<p>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p> <p>㉕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p> <p>기둥과 ~ 30m 이상인 ~ 받는다.</p>	<p>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u>20m</u> 이상인 건축물</p> <p>㉕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u>30m</u> 이상인 건축물</p> <p>기둥과 ~ <u>20m</u> 이상인 ~ 받는다.</p>																				
214	하단에 내용추가	<p>(3) 기준의 강화</p> <p>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tr> <td>1. 건축물의 구조(법 제48조)</td> </tr> <tr> <td>2.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법 제49조)</td> </tr> <tr> <td>3.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법 제50조)</td> </tr> <tr> <td>4. 승강기(법 제64조)</td> </tr> </table>	1. 건축물의 구조(법 제48조)	2.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법 제49조)	3.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법 제50조)	4. 승강기(법 제64조)																	
1. 건축물의 구조(법 제48조)																							
2.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법 제49조)																							
3.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법 제50조)																							
4. 승강기(법 제64조)																							
243	표안에 내용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당해 용도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th> </tr> </thead> <tbody> <tr> <td>6. 참고</td> <td>3,000m² 이상(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6,000m² 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당해 용도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6. 참고	3,000m ² 이상(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6,000m ² 이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당해 용도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th> </tr> </thead> <tbody> <tr> <td>6. 참고</td> <td><u>600m²</u> 이상(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 <u>1,200m²</u> 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당해 용도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6. 참고	<u>600m²</u> 이상(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 <u>1,200m²</u> 이상)												
구 분	당해 용도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6. 참고	3,000m ² 이상(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6,000m ² 이상)																						
구 분	당해 용도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6. 참고	<u>600m²</u> 이상(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 <u>1,200m²</u> 이상)																						
247	4번문제	㉗ 경간 30m 이상의 건축물	㉗ 경간 <u>20m</u> 이상의 건축물																				
272	상단표 내용추가	<p>(2)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p> <table border="1"> <tr> <td>6. 단열재를 구조체의 ~ 부분</td> </tr> <tr> <td>7.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캐레이터, 승강장 등의 부분</td> </tr> </table>	6. 단열재를 구조체의 ~ 부분	7.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캐레이터, 승강장 등의 부분																			
6. 단열재를 구조체의 ~ 부분																							
7.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캐레이터, 승강장 등의 부분																							
298	표내용 수정	<p>1) 대상지역</p> <p>3.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역</p>	<p>1) 대상지역</p> <p>3. <u>지역개발사업구역</u></p>																				
326	표내용 수정	<p>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p> <table border="1"> <thead> <tr> <th>법조항</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법제51조의2</td> <td></td> </tr> </tbody> </table> <p>2 건축구조기술자의 협력</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 건축물</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td> <td></td> </tr> <tr> <td>5. 지진구역 I 에 지어지는 건축물 중 중요도(특), 중요도(I)의 건축물</td> <td></td> </tr> </tbody> </table>	법조항	내용	법제51조의2		대상 건축물	내용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5. 지진구역 I 에 지어지는 건축물 중 중요도(특), 중요도(I)의 건축물		<p>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p> <table border="1"> <thead> <tr> <th>법조항</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법제50조의2</td> <td></td> </tr> </tbody> </table> <p>2 건축구조기술자의 협력</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 건축물</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u>20m</u> 이상인 건축물</td> <td></td> </tr> <tr> <td>5. 지진구역 <u>안</u>의 건축물</td> <td></td> </tr> </tbody> </table>	법조항	내용	법제50조의2		대상 건축물	내용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u>20m</u> 이상인 건축물		5. 지진구역 <u>안</u> 의 건축물	
법조항	내용																						
법제51조의2																							
대상 건축물	내용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5. 지진구역 I 에 지어지는 건축물 중 중요도(특), 중요도(I)의 건축물																							
법조항	내용																						
법제50조의2																							
대상 건축물	내용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u>20m</u> 이상인 건축물																							
5. 지진구역 <u>안</u> 의 건축물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394	표내용 수정	<p>3 건축위원회 심의 (1) 심의사항</p> <table border="1"> <tr> <td>중앙건축위원회</td> <td>지방건축위원회</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및 시행령의 개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중앙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의 ~ (삭제)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중앙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 다중이용~ 있다. (삭제)					
395	내용수정 및 추가	<p>(2) 심의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 한다. ② 심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한다. 	<p>(2) 심의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음의 건축물을 ~ 한다. <table border="1"> <tr><td>1. 미관지구내 건축물</td></tr> <tr><td>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td></tr> <tr><td>3. 다른 법률에 의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td></tr> <tr><td>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td></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심의 ~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에 ~ 결과를 14일 내에 심의를 ~ 한다. 	1. 미관지구내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다른 법률에 의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 미관지구내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다른 법률에 의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99	내용수정	<p>(1) 분쟁조정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건축분쟁~ 90일 이내에, 재정신청~ 180일 이내에 ~ 한다. 	<p>(1) 분쟁조정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건축분쟁~ 60일 이내에, 재정신청~ 120일 이내에 ~ 한다. 				
407	6번문제 정답	ⓐ	ⓐ				
408	8번문제	삭제해 주세요					
409	14번해설	<table border="1"> <tr><td>조정위원회 조정안작성</td></tr> </table> <p>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 재정위원~ 180일 이내에 ~ 작성</p>	조정위원회 조정안작성	<table border="1"> <tr><td>조정위원회 조정안작성</td></tr> </table> <p>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 재정위원~ 120일 이내에 ~ 작성</p>	조정위원회 조정안작성		
조정위원회 조정안작성							
조정위원회 조정안작성							
414	본문내용 추가		<p>[5] 입지구제최소구역계획 <u>입지구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구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 계획을 말한다.</u></p>				
421	내용추가	<p>(2) 구분 및 지정목적</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정목적</th> </tr> </thead> <tbody> <tr> <td>9. 방재지구</td> <td> <p>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및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p> </td> </tr> </tbody> </table>	구분	지정목적	9. 방재지구	<p>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및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 •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구분	지정목적						
9. 방재지구	<p>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및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p>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435	상단표 내용추가	(2) 내용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	(2) 내용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437	상단표 내용추가	(1)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 일반적인 경우 • 국토~ 계획 • 개발제한~ 계획	(1)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 일반적인 경우 • 국토~ • 개발제한~ • <u>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u>
438	핵심 PLUS	■ 지형도면의 작성 1. 원칙 : ~ 지형도 2. 녹지지역~ 지형도 3. 총괄도~	<u>모두 삭제</u>
440	표 내용 추가	(3) 도시지역 ~ 임의지정 1) 대상지역 1.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이 <u>다만,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u>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A) 10만m ² 이하 A의 20% 이내 10만m ² 초과 A의 10% 이내 2. 개발진흥지구	
442	하단에 내용추가	3 입지규제최소구역 1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2. 지정절차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 지정권자로부터 지정을 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 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①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 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 의 경우 20% 이내의 변경에 한정한다. 3. 지정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 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②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 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442	<p>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내용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hr/> <p>1.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p> <hr/> <p>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p> <hr/> <p>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p> <hr/> <p>4.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p> <hr/> <p>5.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p> <hr/> <p>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p> <hr/> <p>3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계획의 지정기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p> <hr/> <p>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p> <hr/> <p>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p> <hr/> <p>3. 도시·군기본계획과 부합성</p> <hr/> <p>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정비 효과</p> <hr/> <p>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p> <hr/> <p>4 타법과의 관계</p> <p>[1] 타법의 배제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hr/> <p>1.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p> <hr/> <p>2.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p> <hr/> <p>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p> <hr/> <p>[2] 타법의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p> <hr/> <p>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에서의 행위제한</p> <hr/> <p>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p> <hr/> <p>[3] 특별건축구역으로의 지정 간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446	<p>(3) 준주거지역~ 있는 건축물</p> <hr/> <p>가. 단독주택</p> <hr/> <p>~</p> <hr/> <p>차. 운동시설</p> <hr/>	<p>(3) 준주거지역~ 있는 건축물</p> <hr/> <p>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p> <hr/> <p>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p> <hr/> <p>다. 숙박시설</p> <hr/> <p>라. 위탁시설</p> <hr/> <p>마. 공장</p> <hr/> <p>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p> <hr/> <p>사.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p> <hr/> <p>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p> <hr/> <p>자. 자원순환관련시설</p> <hr/> <p>차. 묘지관련시설</p> <hr/>
	본문내용 수정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447	<p>(4) 상업지역~ 있는 건축물</p> <table border="1" data-bbox="363 304 884 887"> <thead> <tr> <th>중심상업 지역</th> <th>일반상업 지역</th> <th>근린상업 지역</th> <th>유통상업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중심상업 지역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 지역	유통상업 지역					<p>(4) 상업지역~ 없는 건축물</p> <table border="1" data-bbox="919 304 1439 1715"> <thead> <tr> <th>중심상업 지역</th> <th>일반상업 지역</th> <th>근린상업 지역</th> <th>유통상업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가. 단독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공동주택 다.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마. 공장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 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사.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아.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자.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폐차장 차. 묘지관련 시설</td> <td>가.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나. 위락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 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마.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사. 자원순환 관련시설 아. 묘지관련 시설</td> <td>가. 의료시설 중 격리 병원 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다. 위락시설 라. 공장 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 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바.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부터 사 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자원순환 관련시설 자. 묘지관련 시설</td> <td>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의료시설 라.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마. 위락시설 바. 공장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 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아.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자. 자원순환 관련시설 차. 묘지관련 시설</td> </tr> </tbody> </table>	중심상업 지역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 지역	유통상업 지역	가. 단독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공동주택 다.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마. 공장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 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사.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아.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자.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폐차장 차. 묘지관련 시설	가.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나. 위락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 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마.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사. 자원순환 관련시설 아. 묘지관련 시설	가. 의료시설 중 격리 병원 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다. 위락시설 라. 공장 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 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바.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부터 사 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자원순환 관련시설 자. 묘지관련 시설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의료시설 라.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마. 위락시설 바. 공장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 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아.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자. 자원순환 관련시설 차. 묘지관련 시설
	중심상업 지역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 지역	유통상업 지역														
중심상업 지역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 지역	유통상업 지역															
가. 단독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공동주택 다.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마. 공장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 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사.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아.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자.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폐차장 차. 묘지관련 시설	가.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나. 위락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 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마.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사. 자원순환 관련시설 아. 묘지관련 시설	가. 의료시설 중 격리 병원 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다. 위락시설 라. 공장 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 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바.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부터 사 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자원순환 관련시설 자. 묘지관련 시설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의료시설 라.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마. 위락시설 바. 공장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 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아.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자. 자원순환 관련시설 차. 묘지관련 시설															
<p>(5) 공업지역~ 있는 건축물</p> <table border="1" data-bbox="363 1800 884 2029"> <thead> <tr> <th>전용공업지역</th> <th>일반공업지역</th> <th>준공업지역</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p>(5) 공업지역~ 있는 건축물</p> <table border="1" data-bbox="919 1800 1439 2029"> <thead> <tr> <th>전용공업지역</th> <th>일반공업지역</th> <th>준공업지역</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다음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가. 위락시설 나. 묘지관련 시설</td> </tr> </tbody> </table>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다음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가. 위락시설 나. 묘지관련 시설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다음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가. 위락시설 나. 묘지관련 시설																

본문내용
수정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448	본문내용 수정		<p>(7) 관리지역~ 있는 건축물</p> <p style="text-align: center;">계획관리지역</p> <p>다음의 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p> <p>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p> <p>나. 공동주택 중 아파트</p> <p>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p> <p>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p> <p>마. 판매시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p>바. 업무시설</p> <p>사.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p> <p>아. 위락시설</p> <p>자. 공장</p>																																		
453	1번문제	㉞ 정신병원	㉞ <u>격리</u> 병원																																		
	해설	<p>준주거지역내 허용건축물</p> <p>1. 단독주택 ~</p> <p>*휴게소는 ~이다.</p>	<p>준주거지역내 <u>금지</u>건축물</p> <p>1. <u>단란주점</u></p> <p>2. <u>격리병원</u></p> <p>3. <u>숙박시설</u></p> <p>4. <u>위락시설 등</u></p>																																		
	정답	㉞	㉞																																		
477	78번 해설	<p>지역안 건축제한의 주요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숙박</th> <th>위락</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상업지역</td> <td>중심</td> <td>○</td> <td>○</td> </tr> <tr> <td>일반</td> <td>○</td> <td>○</td> </tr> <tr> <td>유통</td> <td>◎</td> <td>◎</td> </tr> <tr> <td>근린</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도시계획~ 있음.</p>	구 분		숙박	위락	상업지역	중심	○	○	일반	○	○	유통	◎	◎	근린	○	◎	<p>지역안 건축제한의 주요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숙박</th> <th>위락</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상업지역</td> <td>중심</td> <td>○</td> <td>◎</td> </tr> <tr> <td>일반</td> <td>○</td> <td>◎</td> </tr> <tr> <td>유통</td> <td>○</td> <td>◎</td> </tr> <tr> <td>근린</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u>허용시설임.</u> (추가)</p>	구 분		숙박	위락	상업지역	중심	○	◎	일반	○	◎	유통	○	◎	근린	○	◎
		구 분		숙박	위락																																
	상업지역	중심	○	○																																	
일반		○	○																																		
유통		◎	◎																																		
근린		○	◎																																		
구 분		숙박	위락																																		
상업지역	중심	○	◎																																		
	일반	○	◎																																		
	유통	○	◎																																		
	근린	○	◎																																		
79번문제	<p>다음 중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p> <p>㉞ 안마시술소</p> <p>준주거~ 가능하나 안마시술소의 ~ 없다.</p>	<p>다음 중 ~ 건축할 수 <u>없는</u> 건축물은?</p> <p>㉞ <u>단란주점</u></p> <p>준주거~ 가능하나 단란주점은 ~ 없다.</p>																																			
478	81번해설	㉞ 중심상업지역	<u>삭제</u>																																		
488	상단표 내용추가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장이의 부분의 용도</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 																																		
535	표내용 수정	<p>4. 결격사유</p> <hr/> <p>1. 금지산자· 한정지산자</p> <hr/> <p>5. 자격의 취소</p> <hr/> <p>2. 금지산자· 한정지산자</p>	<p>4. 결격사유</p> <hr/> <p>1. <u>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u></p> <hr/> <p>5. 자격의 취소</p> <hr/> <p>2. <u>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u></p>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571	하단표 수정	(2) 주택의 규모제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규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단독주택</td> <td>• 호당 330m² 이하</td> </tr> <tr> <td>공동주택</td> <td>세대당 297m² 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규모기준	단독주택	• 호당 330m ² 이하	공동주택	세대당 297m ² 이하	(2) 주택의 규모제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규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단독주택</td> <td>삭제</td> </tr> <tr> <td>공동주택</td> <td>삭제</td> </tr> </tbody> </table>	구분	규모기준	단독주택	삭제	공동주택	삭제
구분	규모기준														
단독주택	• 호당 330m ² 이하														
공동주택	세대당 297m ² 이하														
구분	규모기준														
단독주택	삭제														
공동주택	삭제														
573	본문수정	4) 건강친환경주택 <table border="1"> <tbody> <tr> <td>1. 사업주체</td> <td></td> </tr> <tr> <td>2. 국민주택사업주체</td> <td></td> </tr> </tbody> </table>	1. 사업주체		2. 국민주택사업주체		4) 건강친화형주택 2. 사업주체 <table border="1"> <tbody> <tr> <td>1. 사업주체</td> <td></td> </tr> <tr> <td>2. 국민주택사업주체</td> <td></td> </tr> </tbody> </table> 표이동해 주세요	1. 사업주체		2. 국민주택사업주체					
1. 사업주체															
2. 국민주택사업주체															
1. 사업주체															
2. 국민주택사업주체															
576	핵심 PLUS	■ 공구분할기준 1. ~ 이상 2. ~ 이상	삭제												
577	본문수정	(1) 정의 <table border="1"> <tbody> <tr> <td>2. 증축(공동주택)</td> <td>• 세대당 ~ (85m² 미만인 ~ 4/10) 경우</td> </tr> </tbody> </table>	2. 증축(공동주택)	• 세대당 ~ (85m ² 미만인 ~ 4/10) 경우	(1) 정의 <table border="1"> <tbody> <tr> <td>2. 증축(공동주택)</td> <td>• 세대당 ~ (85m² 미만인 ~ 4/10) 경우</td> </tr> </tbody> </table>	2. 증축(공동주택)	• 세대당 ~ (85m ² 미만인 ~ 4/10) 경우								
2. 증축(공동주택)	• 세대당 ~ (85m ² 미만인 ~ 4/10) 경우														
2. 증축(공동주택)	• 세대당 ~ (85m ² 미만인 ~ 4/10) 경우														
580	본문수정	4. 주거실태조사 (1) 조사의 구분 국토교통부장관은 ~ 있다. <table border="1"> <tbody> <tr> <td>3. 조사권자</td> <td>국토교통부장관, ~ 시장·군수</td> </tr> </tbody> </table>	3. 조사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군수	4. 주거실태조사 (1) 조사의 구분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 있다. <table border="1"> <tbody> <tr> <td>3. 조사권자</td> <td>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td> </tr> </tbody> </table>	3. 조사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3. 조사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군수														
3. 조사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588	본문수정	2. 친환경주택 ① 20세대 ~ 건설하는 ~ 한다. ② 제1항에 ~ 한다.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 한다. ② 제1항에 ~ 성능평가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589	본문수정	(2) 장수명 주택 인증제 ②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 한다. (3) 장수명 ~ 완화 <table border="1"> <tbody> <tr> <td>1. 건폐율</td> <td></td> </tr> <tr> <td>2. 용적률</td> <td></td> </tr> <tr> <td>3. 건축물의 높이제한</td> <td></td> </tr> </tbody> </table>	1. 건폐율		2. 용적률		3. 건축물의 높이제한		(2) 장수명 주택 인증제 ②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 때에는 일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3) 장수명 ~ 완화 <table border="1"> <tbody> <tr> <td>1. 건폐율(기준값 대비 110% 이하)</td> <td></td> </tr> <tr> <td>2. 용적률(기준값 대비 110% 이하)</td> <td></td> </tr> <tr> <td>3. 건축물의 높이제한</td> <td></td> </tr> </tbody> </table>	1. 건폐율(기준값 대비 110% 이하)		2. 용적률(기준값 대비 110% 이하)		3. 건축물의 높이제한	
	1. 건폐율														
2. 용적률															
3. 건축물의 높이제한															
1. 건폐율(기준값 대비 110% 이하)															
2. 용적률(기준값 대비 110% 이하)															
3. 건축물의 높이제한															
	핵심 PLUS 추가	■ 장수명 인증등급 1. 최우수등급 2. 우수등급 3. 양호등급 4. 일반등급													
591	본문내용 삭제		2 주택의 규모 이하 내용과 표 모두 삭제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592	하단표 수정			(1건 사업규모)	
		1.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호 이상 • 공공택지에서의 건축인 경우 • 한옥 	50호 이상	
		2.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 포함) •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30m ² 이상으로서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폭이 6m 이상인 경우	50세대 이상
		3. 대지조성	• 1만m ² 이상		
593	본문내용 수정	예외 1. 도시지역중 ~ 경우 가. ~ 이하) 나. ~ 경우		예외 1. 도시지역중 ~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가, 나 삭제	
		(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① 공구별 ~ 기준 ② ~ 있다.		(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 10만m ² 이상 특별시장,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10만m ² 미만 특별시장, ~ 시장·군수		2. 사업계획승인권자 10만m ² 이상 특별시장, ~ 도지사 , 대도시시장 10만m ² 미만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 ~ 시장·군수	
594	본문내용 수정	5. 사용검사 (1) 절차 ① 사업주체는 ~ 경우에는 ~ 받아야 한다.		5. 사용검사 (1) 절차 ① 사업주체는 ~ 경우(공구별 건물공사 완료 포함 : 분할사용검사)에는 ~ 받아야 한다.	
		(3) 사용검사 신청 사용검사신청자 및 시기 • 시공보증자 •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3) 사용검사 신청 사용검사신청자 및 시기 • 시공보증자 • 입주예정자	
	핵심 PLUS	■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 4. ~ 경우 5. ~ 경우		■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 4. 삭제 5. 삭제	
595	본문내용 수정	1. 감리자 지정 주택건설~ 감리자의 자격 1. 300세대 미만 • 건축사법에 의하여 ~ 있는 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 건축감리전문회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 종합감리전문회사 2. 300세대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 건축감리전문회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 종합감리전문회사		1. 감리자 지정 주택건설~ 감리자의 자격 1. 300세대 미만 • 건축사법에 의하여 ~ 있는 자 • 건설기술 진흥 법에 ~ 건설기술용역업자 • 삭제 2. 300세대 이상 • 건설기술 진흥 법에 ~ 건설기술용역업자 • 삭제	
	핵심 PLUS	■ 시공제한 적용 3. 냉·난방~ : 기계설비, 공사업, 난방시공업		■ 시공제한 적용 3. 냉·난방~ : 기계설비공사업 , 난방시공업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600	6번해설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 대지	사업계획승인대상 단독주택 대지
	정답	㉠	㉠
	7번해설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은 ~ 한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은 ~ 한다.
	정답	㉠	㉠
	8번문제	㉠ 단독주택 : 20호 이상 ㉡ 연립주택 : 30세대 이상 ㉢ 도시형 생활주택 : 20세대 이상 ㉣ 아파트 : 20세대 이상	㉠ 단독주택 : 30호 이상 ㉡ 연립주택 : 50세대 이상 ㉢ 다세대주택 : 30세대 이상 ㉣ 아파트 : 30세대 이상
	8번해설	• 단독주택, 아파트 : 20세대(호) 이상 •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30세대 이상	• 단독주택, 아파트 : 30세대(호) 이상 • 한옥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50세대 이상
	9번문제	㉠ 공동주택의 ~ 20세대인 주택건설사업 ㉡ 도시형 생활주택의 ~ 주택건설사업	㉠ 공동주택의 ~ 30세대인 주택건설사업 ㉡ 단지형 연립주택의 ~ 주택건설사업
9번해설	도시형생활주택 : 3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 30세대 이상	
605	본문내용 수정	1. 공업화주택 인정대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 할 수 있다.	1. 공업화주택 인정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 ~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①항 규정에 ~ 할 수 있다.
		2. 공업화주택 인정절차 ① 공업화주택~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업화주택 인정절차 ① 공업화주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조 ~ 학술단체의 평가서 ② 국토~ 한다.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 ② 삭제
		3. 공업화주택 인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있다.	3. 공업화주택 인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 있다.
		4. 공업화 주택의 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있다. ② 건축사 ~ 않는다.	4. 공업화 주택의 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사업주체에 ~ 있다. ② 삭제
656	18번해설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은 ~ 한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은 ~ 한다.
	정답	㉠	㉠
664	24번 해설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 건축물 설계 대상 ③ 사용승인을 ~ 건축물	건축사 설계대상 건축물 건축물 설계 대상 ③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665	33번 해설	용도변경 절차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분 류</th> <th style="width: 50%;">시 설 군</th> </tr> </thead> <tbody> <tr> <td>② 산업등의 시설군</td> <td>•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td> </tr> </tbody> </table>	분 류	시 설 군	② 산업등의 시설군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용도변경 절차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분 류</th> <th style="width: 50%;">시 설 군</th> </tr> </thead> <tbody> <tr> <td>② 산업등의 시설군</td> <td>• 자원순환관련시설</td> </tr> </tbody> </table>	분 류	시 설 군	② 산업등의 시설군	• 자원순환관련시설
분 류	시 설 군										
② 산업등의 시설군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분 류	시 설 군										
② 산업등의 시설군	• 자원순환관련시설										
678	12번문제	주택법령상 ~ 주택의 규모가 아닌 것은? ㉠ 연립주택 : 30세대 이상 ㉡ 도시형 생활주택 : 20세대 이상	주택법령상 ~ 주택의 규모에 해당되는 것은? ㉠ 단지형 연립주택 : 30세대 이상 ㉡ 단지형 다세대 주택 : 50세대 이상								
	12번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 단독주택, 아파트 : 20세대(호) 이상 └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대상 ┌ 단독주택, 아파트 : 30세대(호) 이상 └ 단지형 연립, 다세대 : 50세대 이상								
679	21번 문제	㉡ 기둥과 ~ 20m인 건축물	㉡ 기둥과 ~ 30m 이상인 건축물								
	21번 해설	기둥과 ~ 30m 이상인 ~ 받는다.	기둥과 ~ 20m 이상인 ~ 받는다.								
704	30번 문제	㉠ 공동주택의 ~ 20세대인 주택건설사업 ㉡ 도시형 생활주택의 ~ 주택건설사업	㉠ 공동주택의 ~ 30세대 인 주택건설사업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20세대 주택건설사업								
	30번 해설	도시형 생활주택 : 30세대 이상	단지형 다세대주택 : 50세대 이상								

【※ 위의 내용 이외의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셨다면 www.inup.co.kr
 건축사예비시험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